

2023. 12. 7.

부설조직 운영규칙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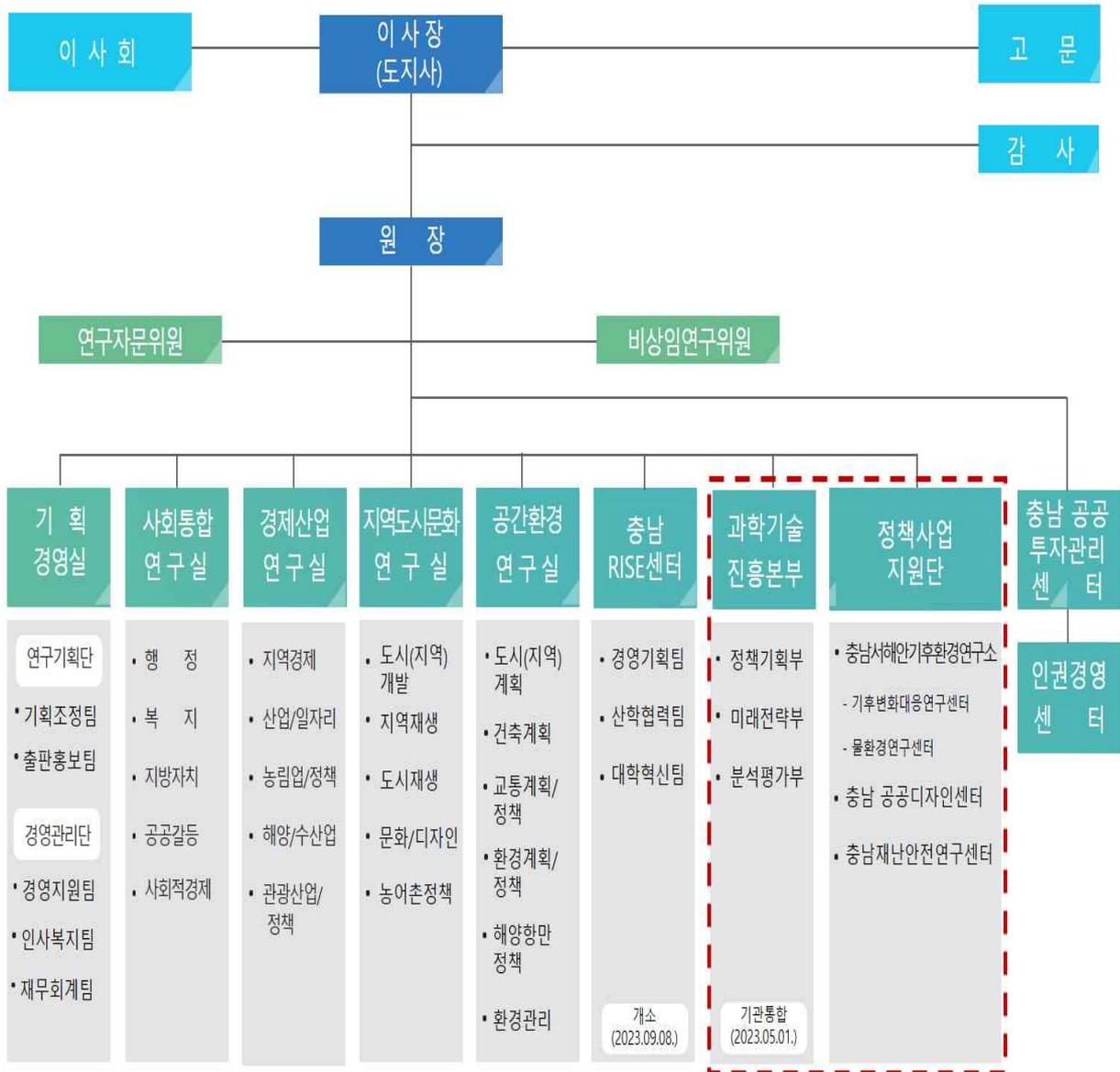
현행	개정(안)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 (이하 “연구원” 이라 한다) 직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된 과학기술진흥본부, <u>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(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·물환경연구센터), 충남공공디자인센터,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 (이하 “연구원” 이라 한다) 직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된 과학기술진흥본부, <u>정책사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3조(사업)</p> <p>②정책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다음 각목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센터 정책연구사업 심의.기획.조정 2.센터 행정.재정 및 경영일반 지원 3.센터 정책연구사업결과물 발간 및 홍보 4.센터 정책연구사업지원을 위한 공동 조성 사업 5.충청남도, 충남연구원, 정책사업지원단 간 네트워크 구축 6.센터 간 정책연구사업의 연계협력 지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 설)</u></p> <p>7.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</p>	<p>제3조(사업)</p> <p>②정책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다음 각목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센터 정책연구사업 심의.기획.조정 2.센터 행정.재정 및 경영일반 지원 3.센터 정책연구사업결과물 발간 및 홍보 4.센터 정책연구사업지원을 위한 공동 조성 사업 5.충청남도, 충남연구원, 정책사업지원단 간 네트워크 구축 6.센터 간 정책연구사업의 연계협력 지원 <p><u>7.과학기술진흥본부 예산편성 및 운영(집행 등)</u></p> <p>8.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</p>

현행	개정(안)
<p>③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p> <p>제4조(운영근거) 정책사업지원단 내 부설조직의 <u>부설조직의</u> 운영 근거는 다음 각 항과 같다.</p> <p>제8조(부설조직의 장) ①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<u>원장이 임면한다.</u></p> <p>② -----</p> <p>③과학기술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<u>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경우</u> 연임할 수 있다. 연임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p> <p>④ -----</p> <p>제16조(직원의 구분) 부설조직의 직원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성하되 <u>“별표2”와 같다.</u></p>	<p>③ -----</p> <p>④정책사업지원단은 <u>과학기술진흥본부의 예산편성 및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수시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운영근거) 정책사업지원단 내 부설조직의 운영 근거는 다음 각 항과 같다.</p> <p>제8조(부설조직의 장) ①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<u>원장이 임면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<u>삭제</u>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직원의 구분) 부설조직의 직원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성하되 <u>“별표2”와 같으며, 본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29조(회계관직 지정 및 운영) ①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 : 원장 2. 분임징수관 : <u>기획경영실장, 과학기술진흥본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</u> 3. 재무관 : <u>기획경영실장</u> 4. 분임재무관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</u> 5. 지출원 : <u>기획경영실 재무회계팀장</u> 6. 분임지출원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, 정책사업지원단 내 센터장</u> 7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<u>부설조직의 장이 전결로 처리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	<p>제29조(회계관직 지정 및 운영) ①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 : 원장 2. 분임징수관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</u> 3. 재무관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</u> 4. 분임재무관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,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</u> 5. 지출원 : <u>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, 정책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직원(단장이 지정)</u> 6. (삭제) 7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<u>부장 및 센터장이 전결로 처리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 (안)
<p>제30조(예산집행의 품의) ①원장은 <u>과학기술진흥본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, 센터장에게</u>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-----</p> <p>2. <u>센터장</u> :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30조(예산집행의 품의) ①원장은 <u>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각 부장, 정책사업지원단장 및 각 센터장에게</u>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부장 및 센터장</u> :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과학기술진흥본부 예산편성 및 운영의 특례) <u>과학기술진흥본부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 성과제고 등을 위해 정책사업지원단에서 업무를 대행한다.</u></p>

<별표 1> 부설조직 기구표 <개정 2019. 5. 27., 2020. 1. 21., 2023. 5. 22., 2023. 12. 7.>



※ 변경사항 : 충남라이즈센터 추가

<별표 2> <개정 2019. 5.27., 2019. 8.29., 2020. 1.21., 2023. 5. 22., 2023. 12. 7.>

부설조직 직급 및 정원표

1. 과학기술 진흥본부

□ 직위(급)별 정원 : 15명(본부장 1, 연구직 14)

□ 부서별 정원 : 15명(본부장 포함)

○ 본부장 : 1

○ 정책기획부 : 5(연구직)

○ 미래전략부 : 5(연구직)

○ 분석평가부 : 4(연구직)

2. 정책사업지원단 내

부서별		직렬	직위(직급)	정원	비고
합계				19명	
정책사업지원단 (행정지원팀)		소계		(2)	
		관리직	2 ~ 7급	(2)	파견
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		합계		13	
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	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	소계		6	
		연구직	수석연구위원 · 선임연구위원 · 연구위원 · 책임연구원 · 연구원	3	
		관리직	2 ~ 7급	1	
		무기계약직	-	2	
	물환경 연구센터	소계		7	
		연구직	수석연구위원 · 선임연구위원 · 연구위원 · 책임연구원 · 연구원	5	
		무기계약직	-	2	
충남 공공 디자인센터		소계		4	
		연구직	수석연구위원 · 선임연구위원 · 연구위원 · 책임연구원 · 연구원	3	
		무기계약직		1	
충남재난안전 연구센터		소계		2	
		연구직	수석연구위원 · 선임연구위원 · 책임연구원 · 연구원	2	

※ 변경내용 1(안) : 직렬 및 직위명칭에서 전임용어 모두 삭제

- 직렬명칭 : 전임연구직 → 연구직, 직위명칭 : 전임수석연구위원 → 수석연구위원

※ 변경내용 2(안) : 정책사업단 관리직 파견인력을 1명 중(총 2명)

<별표 3> 부설조직 직원 채용자격 기준(안) <신설 2023. 5. 22.> <개정 2023. 12. 7.>

1) 연구 직

직 급		자 격 기 준
수석연구위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7년 이상 해당 연구경력을 가진 자 · 원내 선임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선임연구위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연구경력을 가진 자 · 원내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연구위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· 원내 책임연구원 경력 5년 이상인 자
책임연구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· 원내 전문연구원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
전 문 연구원	가 급 (6급상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설조직 전임연구원(석사학위)으로 임용되어 본원 연구실로 이관된 자 · 본원에 통합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근무 및 유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	나 급 (7급상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원에 통합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근무 및 유사경력이 10년 미만인 자

- ※ 전문연구원의 “가·나” 는 승진이 아니며, 경력 등을 고려 연구수당 등을 차별 지급하기 위해 분류한 것이며 소요연수가 경과하면 가등급으로 지급
- ※ 과학기술진흥본부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 취득년수, 실 근무년수 및 유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임용

☞ 변경내용안(삭제) : 아래 2가지

- 직급명칭앞에 붙은 “전임” 이라는 용어 모두 삭제
- 직급란 중 (수석연구원 등)속은 연구원 본원직원 직급명칭이며 과학기술진흥본부 직원은 본원의 직위명칭을 사용한다.

2) 관 리 직

직 급	자 격 기 준
관리 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4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원내 관리 3급으로써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관리 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원내 관리 4급으로써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관리 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6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원내 관리 5급으로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관리 5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7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원내 관리 6급으로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통합되는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중 석사학위자로 실 근무 및 유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관리 6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원내 관리 7급으로써 1년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통합되는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중 학사학위자로 실 근무 및 유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관리 7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9급 이상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·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※ 통합되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직원은 본원의 직위명칭을 사용하고, 실 근무 및 유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적절한 직급으로 임용

☞ 변경내용(안) : 아래 2가지

- 직급란 중(관리2급 등)속은 연구원 본원직원 직급명임
- 직급명칭앞에 붙은 “전임”이라는 용어 모두 삭제